##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 박충권·송석준·김승수

임이자·김위상·김성원

김정재 · 엄태영 · 서지영

박성훈 • 박대출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, 친·인척 등 없이 무연고자로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음.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 및 유골 봉안도 지원하고있음.

최근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시장 등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,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의식 주관자의 범위가 확대됨.

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장례비용 및 봉안시설 등 장례지원이 상이하고 북한이탈주민인 무연고 사망자와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들 간 장례의식 주관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지원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.

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장 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4항제8호의3 신설). 법률 제 호

##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4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3. 북한이탈주민으로서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 식 및 봉안 등 장례지원에 관한 사업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0조(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) ①	제30조(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) ①		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	4		
을 수행한다.			
1. ~ 8의2. (생 략)	1. ~ 8의2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8의3. 북한이탈주민으로서 「장		
	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		
	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		
	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		
	에 대한 장례의식 및 봉안 등		
	장례지원에 관한 사업		
9. (생략)	9. (현행과 같음)		
⑤ ~ ⑯ (생 략)	⑤ ~ ⑯ (현행과 같음)		